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시본청 정원 '383'을 '401'로하고, 동조 제3호중 직속기관 정원 '146'을 '143'으로, 동조 제4호중 사업소의 정원 '55'를 '49'로, 동조 제5호중 출장소의 정원 '11'을 '10'으로, 동조 제6호중 읍면동의 정원 '352'를 '34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파주시의 본청 · 소속기관 및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원의 총수) ----- ----- -----.							
1. 시 본 청 : <u>383명</u>	1. 시 본 청 : <u>401명</u>							
2. (생 략)	(현행과 같음)							
3. 직속기관 : <u>146명</u>	3. 직속기관 : <u>143명</u>							
4. 사 업 소 : <u>55명</u>	4. 사 업 소 : <u>49명</u>							
5. 출 장 소 : <u>11명</u>	5. 출 장 소 : <u>10명</u>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352명</u>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344명</u>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파주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 청 : 383명
2. 의회사무국 : 19명
3. 직속 기관 : 146명
4. 사 업 소 : 55명
5. 출 장 소 : 11명
6.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52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본청·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개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지방공무원임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 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地方自治法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방공무원, 기능직 5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 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 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신설 95·12·28>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 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5·5·16> 1. 본 청 2. 의회사무기구 3. 직속기관 4. 출장소 5. 사업소 6. 자치구가 아닌 구 7. 읍·면·동 및 그 출장소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신설 97.1>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7.1> 제6장 보 칙 제22조(시정요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	